

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

<표 2> 지방교육세의 세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 교육세 당시의 세율
1	등록세액	20%	20%
2	경주·마권세액	60%(10%증)	50%
3	주민세균등할 세액	10~25%	10~25%
4	재산세액	20%	20%
5	자동차세액	30%	30%
6	담배소비세액	50%(10%증)	40%
7	종합토지세액	20%	20%

지방교육세의 세율 적용에 있어 주의할 점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분교육세는 2005.12.31까지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나, 2006.1.1부터는 '95년 이전 세율인 20%로 환원하게 되며, 담배소비세분교육세의 경우는 2005년까지만 과세하게 된다는 점이다.

○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법제260조의4, 영제218조·제218조의2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가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시행령 제21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세의 추징 및 가산세 - 법제260조의5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